## 참고

##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

- ※ 적서로 작성된 부분은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강화조치
- ※ 청서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

	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4.2.~4.11.)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3.29.~4.1.)	
① 모 <sup>6</sup>	① 모임·행사			
사적	모임	▶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 인까지 가능)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	▶ 좌동	
기타	· 모임·행사	<ul> <li>▶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</li> <li>★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</li> <li>▶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	<ul> <li>▶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500명 이상 모임·행사는 지자체 신고·협의 필요, 방역수칙 의무화</li> <li>▶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축제,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</li> <li>★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㎡당 1명 인원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	
② 다중	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		
공통	수칙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	▶ 좌동	
	<b>시설 5종, 홀덤펍</b> 동단란:감성주점,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)	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)	

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4.2.~4.11.)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3.29.~4.1.)
콜라텍, 헌팅포차)	<ul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인원산정시 유흥자자 달라포함)</li> <li>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</li> <li>▶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(아크릴 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)</li> <li>▶ 클럽,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 금지)</li> <li>★ 무도장·콜라텍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</li> <li>▶ 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・룸 간에 이동 금지</li> </ul>	<ul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달러 포함)</li> <li>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</li> <li>▶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(아크릴 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)</li> <li>▶ 클럽,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 금지)</li> <li>★ 무도장·콜라텍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</li> <li>▶ 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・룸 간에 이동 금지</li> </ul>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★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준수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★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준수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연습장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,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(대장작성) ★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수칙 적용, 다만 4m²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	▶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▶음식 섭취 금지(물-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내 스탠딩공연장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식당·카페 (무인카페 포함)	<ul> <li>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</li> <li>▶ 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li>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</li> </ul>	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
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4.2.~4.11.)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3.29.~4.1.)
	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	/ 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
	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	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실내체육시설 (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)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★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학원·교습소(독서실 제외)/ 직업훈련기관	<ul> <li>▶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</li> <li>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li> <li>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-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★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</li> </ul>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 ★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
결혼식장	▶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▶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목욕장업	<ul> <li>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</li> </ul>	<ul> <li>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-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</li> </ul>
영화관/공연장	▶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
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4.2.~4.11.)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3.29.~4.1.)
PC방	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오락실·멀티방 등	▶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> <li>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(최대 4명까지), 22시 이후 운영 중단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음료는 허용)</li> </ul>	▶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(최대 4명까지)
놀이공원·워터파크	▶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	▶수용가능인원의 1/2로 인원 제한
이·미용업	▶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	▶시설 면적 4m'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백화점·대형마트	<ul><li>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</li><li>▶ 마스크 착용</li><li>▶ 주기적 환기·소독</li></ul>	▶ 좌동
마트·상점(300㎡ 이상)	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	▶ 좌동
편의점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-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 -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	
포장마차 (음식조리·판매시설)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	
③ 기타 다중이용시설		

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4.2.~4.11.)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3.29.~4.1.)
숙박시설	<ul> <li>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</li> <li>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</li> <li>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</li> <li>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</li> </ul>	▶ 좌동
파티룸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m²당 1명) 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신고면적 50m²이상)	▶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신고면적 50㎡이상)
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(등록·미등록 불문)	<ul> <li>▶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</li> <li>▶ 체험 시 영업(관리)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</li> <li>★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,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</li> </ul>	<ul> <li>▶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</li> <li>▶ 체험 시 영업(관리)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</li> <li>★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,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</li> </ul>
국공립시설	▶ 경륜·경마·경정 운영중단 ▶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% 이내로 인원 제한 ▶ 이외 시설(체육시설 등)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	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20% 인원 제한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▶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	▶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④ 일상 및 사회경제	적 활동	
마스크 착용 의무화	<ul><li>▶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· 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</li><li>▶위반 시 과태료 부과</li></ul>	▶ 중점·일반관리시설, 대중교통, 의료기관, 약국, 요양 시설, 주야간보호시설, 집회·시위장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,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▶ 위반 시 과태료 부과

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4.2.~4.11.)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 (3.29.~4.1.)
교통시설 이용	▶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▶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	▶ 마스크 착용
스포츠 관람	▶ 10% 이내로 관중 입장	▶ 30% 이내로 관중 입장
등교	▶ 밀집도 1/3 준수(고교 2/3),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	▶ 밀집도 2/3 준수
종교활동	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	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★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직장근무	<ul> <li>▶ 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</li> <li>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li> <li>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</li> <li>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</li> <li>▶ 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적극활용</li> <li>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보안이 필요한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</li> </ul>	<ul> <li>▶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</li> <li>★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li> <li>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</li> <li>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</li> <li>▶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</li> </ul>

※ <mark>적서</mark>로 작성된 부분은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강화조치

※ 청서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

	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
	① 모임·행사		
	사적 모임	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 인까지 가능)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	▶ 좌동
	기타 모임·행사	<ul> <li>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</li> <li>★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,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</li> <li>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	<ul> <li>▶ 결혼식·장례식·기념식 등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</li> <li>▶ 500명 이상 모임·행사는 지자체 신고·협의 필요, 방역수칙 의무화</li> <li>▶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축제,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</li> <li>★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4㎡당 1명 인원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</li> </ul>
(	② 다중이용시설 : 중	점·일반관리시설 등	
	공통수칙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	<b>▶</b> 좌동
	유흥시설 5종, 홀덤펍 (유흥 단란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	<ul> <li>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)</li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달러포함)</li> <li>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</li> </ul>	<ul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)</li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달러 포함)</li> <li>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</li> </ul>

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
	<ul> <li>▶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(아크릴 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)</li> <li>▶ 클럽,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 금지)</li> <li>★ 무도장·콜라텍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</li> <li>▶ 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</li> </ul>	<ul> <li>▶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(아크릴 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)</li> <li>▶ 클럽,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 금지)</li> <li>★ 무도장·콜라텍은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동일 방역수칙 적용</li> <li>▶ 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・룸 간에 이동 금지</li> </ul>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★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준수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★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준수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연습장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m'당 1명 인원 제한,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(대장작성) ★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코인 노래방의 경우,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수칙 적용, 다만 4m'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▶ 음식 섭취 금지(물-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실내 스탠딩공연장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식당·카페 (무인카페 포함)	<ul> <li>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</li> <li>▶ 식당·카페 모두 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li>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</li> </ul>	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 ▶ 50m²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 / 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

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
	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	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실내체육시설 (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)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▶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학원·교습소(독서실 제외)/ 직업훈련기관	<ul> <li>▶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</li> <li>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li> <li>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★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</li> </ul>	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 ★ 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
결혼식장	▶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▶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
목욕장업	<ul> <li>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li> <li>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</li> </ul>	<ul> <li>▶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사우나·한증막·찜질시설 운영 금지</li> </ul>
영화관/공연장	▶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
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
PC방	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오락실·멀티방 등	▶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음식 섭취 금지(물-무알콜 음료는 허용)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> <li>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(최대 4명까지), 22시 이후 운영 중단</li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-무알콜음료는 허용)</li> </ul>	▶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(최대 4명까지)
놀이공원·워터파크	▶수용가능인원의 1/3로 인원 제한	▶수용가능인원의 1/2로 인원 제한
이·미용업	▶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	▶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백화점·대형마트	<ul><li>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</li><li>▶ 마스크 착용</li><li>▶ 주기적 환기·소독</li></ul>	▶ 좌동
마트·상점(300m² 이상)	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	▶ 좌동
편의점	▶ <mark>22시</mark> ~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-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 -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	
포장마차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	
(음식조리·판매시설)	용) •	
③ 기타 다중이용시설		
숙박시설	▶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	▶ 좌동

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
	<ul> <li>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</li> <li>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</li> <li>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</li> </ul>	
파티룸	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m²당 1명)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m²이상)	▶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★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신고면적 50㎡이상)
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(등록·미등록 불문)	<ul> <li>▶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</li> <li>▶ 체험 시 영업(관리)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</li> <li>★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,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</li> </ul>	<ul> <li>▶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</li> <li>▶ 체험 시 영업(관리)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</li> <li>★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,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</li> </ul>
국공립시설	▶ 경륜·경마·경정 운영중단 ▶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% 이내로 인원 제한 ▶ 이외 시설(체육시설 등)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	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20% 인원 제한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▶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	▶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④ 일상 및 사회경제	적 활동	
마스크 착용 의무화	▶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· 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 ▶ 위반 시 과태료 부과	▶ 중점·일반관리시설, 대중교통, 의료기관, 약국, 요양 시설, 주야간보호시설, 집회·시위장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,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▶ 위반 시 과태료 부과
교통시설 이용	▶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,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	· HC·기취에쓰 기취

구 분	2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	1.5단계 + (전국) 일부 방역수칙 강화
	▶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	▶ 마스크 착용
스포츠 관람	▶ 10% 이내로 관중 입장	▶ 30% 이내로 관중 입장
등교	▶ 밀집도 1/3 준수(고교 2/3), 최대 2/3 내에서 운영 가능	▶ 밀집도 2/3 준수
종교활동	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	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직장근무	<ul> <li>▶ 기관별·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</li> <li>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li> <li>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</li> <li>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</li> <li>▶ 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적극활용</li> <li>* 치안국방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보안이 필요한정보를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, 민간기업·기관의 필수업무인원 범위는 기업·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통해 결정</li> </ul>	<ul> <li>▶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</li> <li>★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li> <li>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</li> <li>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</li> <li>▶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</li> </ul>